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5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4
------------	-----

제출연월일 : 2008년 5 월 7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여비 지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함 (안 제4조)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함 (안 제5조)

3.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여비규정」

4.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련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 특호 라목”을 “별표 1 제1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도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각 항의 항 번호와 조문을 각각 띄어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숙박비 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도지사는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u>(이하 “<u>공무원</u>”이라 한다)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u>월액여비</u>”라 한다) ②~③ (생략)</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u>공무원여비규정</u> <u>별표 1 특호 라목</u>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u>공무원</u>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u>공무원여비규정</u> <u>별표1의 각호</u>를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u>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u> <p>제1조(목적) <u>충청북도 지방공무원</u>.....</p> <p>제2조 <u>충청북도 지방공무원</u>(이하 “<u>도 공무원</u>”이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u>공무원여비규정</u>」 <u>별표 1 제1호 가목</u>을 적용한다. ② <u>도 공무원</u></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도 <u>공무원</u>이 <u>공무로</u> <u>국내여행</u>을 할 때 <u>운임</u>과 <u>숙박비</u>는 <u>별표 1의 기준</u>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도 <u>공무원</u>의 <u>여비지급</u>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하되,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 1호와 같음)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u>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관리규정</u>」 제4조 및 동 규정 <u>별표 1에</u>”를 “「<u>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u>」 제2조 및 <u>별표 1에</u>”로 본다.</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u>여비지급</u>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하되,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1. (생략) 2. 제17조제1항 단서중 “<u>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u>”는 “<u>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u>”로 “<u>동 규정 [별표 1]</u>”은 “<u>동 규칙 [별표 1]</u>”로 본다.</p>	

현 행	개 정 안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항 번호와 조문 띄어쓰기는 생략하였음

관련 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8852호]

제46조 (실비보상등) ①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신설 1981.4.20>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3]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입지로부터 신입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입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②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7.11.13>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7.11.13, 2008.2.29>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2008.2.29>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p>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p> <p>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p> <p>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 (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p> <p>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p>
제2호	<p>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p>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u>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u> , <u>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u>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 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